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설치〉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고양시·용인시·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

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선거 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舉事務所 1個所와 市·道 및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 2. ~ 5. (생략) 6.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舉事務所 1個所.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 1. ----- ----- ----- ----- <u>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u> 2. ~ 5. (현행과 같음) 6. ----- ----- -----

다만,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마다 選舉連絡所 1 個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 구·시·군이 ----- 국회의원 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이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를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 등에 일정기간¹⁾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하 “지역구”라 함)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1조 및 제61조의2).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단위 원칙을 행정구역(시·도 및 구·시·군 등)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선거운동에 있어 지역구가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²⁾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구 획정시 게리맨더링³⁾ 방지를 위하여 하나의 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인구비례(2:1)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 이 경우⁵⁾에는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둘 수 없는

1) 선거운동기구는 후보자가 후보자신분 취득한 때부터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당선거사무소는 법에서 정한 날(법 제61조의2제1항 각호)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매일경제(2024.1.29.), “선거구 교통정리 하세월...OOO, OOO도 사무소 옮길판”

다트NEWS24(2020.1.21.), “OOO vs OO당, 지역사무소 설치 설전”

3)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의미함.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본인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샬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Gerry)의 이름과 합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 부르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 부르게 됨.

4)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문제가 있음.⁶⁾

《현행법상 미비점 예시》

구분	내 용	
가상 사례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A지역구 B지역구 甲군	A지역구 B지역구 C지역구 甲군 乙군
	甲군에서 A지역구와 B지역구 모두 사무소 설치 가능	甲군과 乙군은 각각 해당 군에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 가능
실제 사례	경기도 안산시 사례 :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시 선거구 현황 안산(갑): 사동, 사이동, 해안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을): 알동, 아동, 부곡동, 월곡동, 성포동, 안산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병): 와동, 월곡동, 백운동, 신갈동, 조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안산시 행정구역 (행정동 위치도) 단원구 상록구
	출처: 안산타임스(2024.3.12.)	출처: 안산시청

5) 구체적 사례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행정구역은 상록구, 단원구 2개이나, 국회의원지역구는 안산 갑, 을, 병으로 3개

6) 왜냐하면 현행법은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지역구”라 함)로 된 경우에만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사무소 설치에 있어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현행법상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